

교원 연구년제 및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정 [제명개정 2018. 9. 1., 2021. 3.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연구년제와 해외연수 및 해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 2020.08.12., 2021. 3. 1.)

제 2 조 (적용범위) 교원의 연구년제와 해외연수 및 해외여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9. 1., 2020.08.12., 2021. 3. 1.)

제 1 장 연구년제 (개정 2020.08.12.)

제3조 (연구년제 실시)

학문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교원에게 선진학문에 대한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년제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08.12.]

[종전 제3조는 제10조로 이동]

제4조 (자격)

① 본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당해 교수가 최종적으로 실시한 연구년(기존 안식년 포함) 또는 해외연수 종료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으로서 연구년 시작일로부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4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

② 연구년의 경우는 일반연구년 또는 창업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실시한다. (개정 2021. 3. 1., 2023. 7. 1.)

1. 일반연구년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연구년을 실시하는 교원(산업체, 연구소 등)

2. 창업연구년 :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대학 및 소속 학부(과) 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교원

③ 제1항의 근무년수에는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기간 또는 휴직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 교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1. 3. 1.)

1. 3년 단위평가 미통과 교원

2. 과거 연구년 결과보고서나 교내연구비 결과보서를 미제출하였거나 제출하였으나 미승인된 교원

3. 비위사실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교원

⑤ 총장은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게 1년 이내 특별연구년(일반연구년 또는 창업연구년)을 부여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 제9조 1항 내지 2항은 적용하지 않으나 기타 사항은 적용한다. (신설 2023. 7. 1.)

[본조신설 2020.08.12.]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

제4조의 2 (연구년 발령의 연기)

교원이 연구년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발령을 연기할 수 있다.

1. 책임시수 미충족(연간)

2. 징계의결요구

3. 직위해제

4. 징계처분

[본조신설 2020.08.12.]

[중전 제4조의 2는 제11조의 2로 이동]

제5조 (기간)

- ① 연구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4조 제3항을 고려한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당해 교수가 최종적으로 실시한 연구년(기존 안식년 포함) 또는 해외연수 종료 후 3년 이상 근속자는 6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의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 연구년 시작일로부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1. 3. 1.)
- ② 연구년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년 기간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한 학기에 한하여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년의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
- ③ 연구년 발령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구년 철회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

[본조신설 2020.08.12.]

[중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제6조 (의무)

- ① 연구년 기간이 1년인 교원은 5개월 이상, 연구년 기간이 6개월인 교원은 75일 이상을 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및 전공의 특성, 본교와 타기관의 산학협력 협약체결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연구년을 희망할 경우 국내연구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3. 1., 개정 2023. 7. 1.)
- 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1년 이내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적을 포함하는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계열별 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년 결과물 제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을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 2023. 7. 1.)
 - 1. 논문 1편 : 연구년 및 복귀 후 1년 이내에 게재된 논문으로,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의 연구업적 종합평가표에서 규정한 국제저명학술지, 국외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주저자로 게재한 경우
 - 2. 저서 1편 : 연구년 및 복귀 후 1년 이내에 발간된 저서로,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의 연구업적 종합평가표에서 규정한 국제전문서적 또는 국내전문서적
 - 3. 창업 : 창업연구년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의 산학협력업적 종합평가표에서 규정한 실험실창업, 벤처창업 또는 신기술창업
 - 4. 작품 및 전시 등의 결과물 :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Code표에서 배점 150점/건 이상의 업적으로 해당 Code표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한함
- ③ 연구년 수행기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연구년 수행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강의, 자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체류 시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강의, 논문지도 및 심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원 강의에 따른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1., 2023. 7. 1.)
- ④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연구년 신청을 불허하고 학기당 책임시수 3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개정 2021. 3. 1.)
- ⑥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는 연구년 중에 지급한 보수 중 타기관 소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며, 본인이 원하여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액에 대하여 회수한다. 다만, 복귀 후 일정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할 수 있다.
- ⑦ 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년 중간에 복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적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⑧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연구년 업적은 연구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년 결과로서의 논문 게재에 대

해서는 “이 논문은 0000년도 호서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영문인 경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Hoseo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0000.)”을 명시해야 한다. 이때, 타기관의 지원사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

⑨ 1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출국/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

[본조신설 2020.08.12.]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년 제도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선정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때 교원(연구/산학, 교육, 봉사)업적평가결과, 연구년(기존 안식년 포함) 실시 횟수 및 경과기간, 본교 재직연수, 학교발전 기여도, 학부 또는 학과 경쟁력 평가결과, 부서 발전기여도, 인사이력조치 등을 감안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 3. 1.)

[본조신설 2020.08.12.]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제8조 (허가신청과 선정)

- ①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서류를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 2023. 7. 1.)
 - 1. 연구년 허가신청서(국내 또는 국외)
 - 2. 연구년 계획서
 - 3. 연구요약문
 - 4. 서약서
 - 5. 교·강사 대체 계획서
- ② 총장은 연구년 교수로 선정된 교원에게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

[본조신설 2020.08.12.]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제9조 (연구년 교원수 제한)

- ① 연간 연구년 교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총수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7. 1.)
- ② 연구년 대상 교원의 인원수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수의 7분의 1 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 수로 한다. (개정 2021. 3. 1.)
- ③ 해외 연구출장(대학, 정부기관, 기타 공인연구기관)이 예정된 교원이 연구년 교원자격을 구비한 경우는 대상교원 서열에서 우선한다. (개정 2021. 3. 1.)

[본조신설 2020.08.12.]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제 2 장 안 식 년 제 <삭제 2021. 3. 1>

제 10 조 (안식년제 실시) <삭제 2021. 3. 1.>

[제3조에서 이동]

제11조 (자격) <삭제 2021. 3. 1.>

제 11 조 의 2 (안식년 발령의 연기) <삭제 2021. 3. 1.>

제 12 조 (기간) <삭제 2021. 3. 1.>

제13조 (의무 및 비용지급) <삭제 2021. 3. 1.>

제 14 조 (운영위원회) <삭제 2021. 3. 1.>

제 15 조 (허가신청과 선정) <삭제 2021. 3. 1.>

제 16 조 (안식년 교원수 제한) <삭제 2021. 3. 1.>

제 3 장 해 외 연 수(개정 2020.08.12.)

제17조 (구분) 교원의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 9. 1)

1. 국비지원 해외파견
2. 국내·외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 등에 의한 해외파견
3. 학위취득 목적의 유학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
5. 외국기관(대학, 연구소)에의 자비연구 체류

[제10조에서 이동]

제 18 조 (자격) ① 본 대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 최근 5년 이내에 연구년(기존 안식년 포함) 또는 해외 연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교원도 총 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 2018. 9. 1., 2020.08.12., 2021. 3. 1.)

② 2회 이상 재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연구년(기존 안식년 포함) 또는 해외연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한다. (개정 2001. 9. 1, 2018. 9. 1., 2020.08.12. 2021. 3.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년수에는 관계법령,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기간 또는 휴직 등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1)

[제11조에서 이동]

제 19 조 (선발) ① 해외연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아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본 대학교 장기근속자.
2. 연수목적이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근무자 또는 전공하고 있는 자.
3. 보직자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기타 국비파견 및 비용부담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선발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 9. 1]

[제12조에서 이동]

제 20 조 (연수의 개시와 종료) 해외연수는 개시일을 학기 초로 하고 종료일은 학기말로 하여 허가하며 학기도중의 개시와 종료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9. 1, 2018. 9. 1)

[제13조에서 이동]

제 21 조 (허가의 제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학과와 휴직교원과 연구년 또는 해외연수 중인 교원의 합계가 재직교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때는 이를 허가(또는 연장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1, 2018. 9. 1., 2020.08.12., 2021. 3. 1.)

[제14조에서 이동]

제 22 조 (허가절차)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여행 개시 30일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9. 1)

1. 해외연수허가 신청서(서식10)
2. 연수계획서(서식11)
3. 해외연수요건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제10조 2호의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가 명시된 초청장 첨부)

4. 서약서(서식4)

[제15조에서 이동]

제23조 (귀국보고) 해외연수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서식12)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제24조 (복무의무) ① 6개월 이상 해외연수를 한 교원은 연수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등 일체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의무 근무년한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
2. 연수기간 종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2020.08.12.>

[전문개정 2001. 9. 1]

[제17조에서 이동]

제 4 장 해 외 여 행 및 해 외 출 장(개정 2020.08.12.)

제25조 (구분) 해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업무 및 특정분야의 연구, 훈련, 연수, 시찰 등의 공무 출장 여행
2. 사적 해외여행

[전문개정 2001. 9. 1]

[제18조에서 이동]

제26조 (여행 및 출장의 허가)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15일 이상 할 때에는 사전에 해외연수허가신청서(서식10) 및 출장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가 부여한 교직원업무 및 국책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시작후 1개월내 해외여행 또는 해외출장은 불가하다. 다만, 여행 또는 출장일수는 횟수의 제한없이 학기 중 15일내로 제한하나,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 개정 2010. 9. 1, 2014. 11. 1)

② 제25조 제2호의 해외여행은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1. 9. 1., 개정 2020.08.12.)

③ 수업일수 15일 이상을 결강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은 ①항에 의거하여 학기 중에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보강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신청서 및 결·보강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 2010. 9. 1)

[제19조에서 이동]

제27조 (허가절차) 총장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출장 교원을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출장여행을 명령한다. (개정 2001. 9. 1)

1. 행선지
2. 수행업무
3. 출장기간
4. 출장비
5. 복명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제28조 (연장허가) 해외여행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교원은 여행기간 만료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9. 1)

1. 연장허가 신청서 (서식13) (개정 2010. 9. 1)

2. 연장이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

[제21조에서 이동]

제29조 (여비지급) 공무출장 여행자에 대하여는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1. 9. 1)

[제22조에서 이동]

제30조 (복명) 공무출장 여행자는 복귀 후 즉시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1)

[제23조에서 이동]

제 5 장 보 칙 (개정 2020.08.12.)

제31조 (신분보장) ① 연구년 및 해외연수 교원은 그 기간 중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개정 2018. 9. 1., 2020.08.12., 2021. 3. 1.)

② 연구년(기존 안식년 포함) 및 해외연수 기간은 승진,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 포함된다. (개정 2018. 9. 1., 2020.08.12., 2021. 3. 1.)

[전문 개정 2001. 9. 1, 2015. 9. 1]

[제24조에서 이동]

제32조 (처우) ① 연구년교원 및 해외연수교원에 대한 처우 기타 여행기간 등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 9. 1, 2018. 9. 1., 2021. 3. 1.)

② 정보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분을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제33조 (복귀) ① 연구년 그리고 해외연수 및 여행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 2020.08.12., 2021. 3. 1.)

② 제1항의 연구년 연수 또는 여행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의담당 교원의 현저한 부족, 담당업무의 긴급한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2020.08.12., 2021. 3.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

[전문개정 2001. 9. 1]

[제26조에서 이동]

제34조 (준수사항) 연구년, 해외연수 및 여행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1. 9. 1, 2018. 9. 1., 2020.08.12., 2021. 3. 1.)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본교 교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2. 연수(출장)목적 외의 행위
3.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27조에서 이동]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수연구년제 규정
2. 교직원 해외연수 및 여행에 관한 규정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연구년과 해외연수 및 여행 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연구년 교원수는 2003년 8%, 2004년 10%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연구년 수행 중에 있거나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 및 해외연수 기타 여행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0.08.12.)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연구년 또는 안식년 수행 중에 있거나 연구년 또는 안식년 승인을 받은 교원 및 해외연수, 기타 여행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선정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안식년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개시하지 않은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의 안식년 승인을 철회하고 본 규정에 따른 연구년 허가를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안식년 승인 후 아직 이를 개시하지 않은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승인된 안식년을 본 규정에 따른 연구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